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서호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4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6일

발 의 자: 서호연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영철,
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
김태수, 김혜영, 남궁역,
남창진, 윤종복, 이봉준,
이상욱, 이성배, 이종태,
임춘대, 최민규, 허·훈,
홍국표, 황철규 의원(20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현행 조례에는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고령자 감면 기준이 없어, 후기 고령자의 신체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 마련. (안 제 20조제4항)
- 나. 공원시설 이용료의 비고란에 감면 내용을 반영. (안 별표2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장은 7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 감면율, 대상 시설, 신청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 및 별표 2에서 정한다.

별표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별표 2 제1호의 공통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토, 공휴일은 이용료 30% 가산
- 야간에는 이용료 30% 가산(토, 공휴일은 제외)
-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% 할인
- 풋살경기장은 청소년 이용시 30% 할인, 어린이는 무료(이 경우 청소년 및 어린이의 팀 구성원 비율이 50% 이상일 때 적용)
- 75세 이상의 고령자는 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를 면제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요금의 감면) ① ~ ③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20조(요금의 감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시장은 7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 감면율, 대상 시설, 신청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 및 별표 2에서 정한다.</u>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0조(요금의 감면)제4항 및 별표2를 개정함에 따라 세입금 감소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 -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0조(요금의 감면)제4항 및 별표2를 개정함에 따라 세입금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의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- 단, 서울시 주민등록인구,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 등의 통계를 토대로 대략적인 세입금 감소 범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

[참고] 추계 가능성 및 재정소요 영향 검토

- 서울 열린 데이터광장 제공 통계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75세이상 서울시민(등록외국인 포함)은 756,877명임
-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4 국민생활체육조사(2023년 9월~2024년 8월)에 따르면 70세 이상 생활체육 참여 현황은 57.7%이며, 70세 이상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은 44.2%임 - 75세 이상 서울시민의 생활체육 참여 현황 및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을 현시점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통계를 사용하여 추계
- 75세 이상 서울시민의 57.7%가 생활체육을 참여하고 생활체육을 참여하는 44.2%가 서울시 공원 내 체육시설을 이용한다고 전제 (193,029명)
- 서울 열린 데이터광장 제공 통계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서울시민은 총 9,602,826명임
- 서울시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75세 이상 서울시민(193,029명)은 총 서울시민(9,602,826명)의 약 2%이므로 본 조례 시행 이후의 세입금 감소는 현재 체육시설 총 세입금¹⁾의 2%로 추계

1) 작성 시점 현재 공원 체육시설 관리 담당 부서에서 자료 수합 중으로 회기 시작을 고려하여 미첨부사유서로 먼저 제공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병준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 계 분 석 관 김지혜

☎ 02-2180-7952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